

이민자지위와 범죄심각성이 피해신고에 미치는 영향

노 성 훈*

국 | 문 | 요 | 약

본 연구에서는 이민자와 원주민 간에 범죄피해신고율의 차이를 조사하고자 하였다. 도널드 블랙(Black, 1974)의 이론과 선행연구 결과들을 바탕으로 이민자의 범죄피해신고율이 원주민에 비해 낮다는 가설을 검증하였다. ‘국제범죄피해자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단순절도, 주거침입 절도, 폭행, 강도 등 네 가지 범죄피해 유형 중 강도피해의 경우에 있어서만 이민자 지위가 범죄피해신고율과 유의한 부적(-) 관계를 나타냈다. 선행연구들과 마찬가지로 피해심각성은 범죄피해의 유형에 관계없이 신고율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으며, 피해가 심각할수록 경찰에 신고할 가능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강도피해의 심각성 수준에 따른 이민자 지위와 피해신고 간의 관련성을 조사하였다. 강도피해가 중간수준에 해당하는 ‘심각한 편’인 경우 이민자와 원주민 간의 범죄피해신고율이 가장 큰 차이를 보였다. 피해가 매우 심각한 수준일 때에도 이민자의 신고율이 높았지만 원주민과의 신고율 차이는 피해가 심각한 편인 경우보다는 적었다.

반면, 피해가 심각하지 않을 때에는 두 집단 간의 범죄피해신고율 차이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적 함의로서 형사사법시스템에 대한 이민자들의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방안과 이민자들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제대로 정착하고 원주민과 융화하기 위한 선결조건에 관해 논의하였다.

❖ 주제어 : 이민자, 범죄신고, 범죄피해, 범죄 심각성

I. 서론

그동안 범죄피해신고에 관한 수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범죄학의 측면에서 보면 범죄피해신고는 공식 범죄통계의 가장 중요한 기초자료가 된다는 점에서 결코 소홀히 다룰 수 없는 주제이다. 대부분의 범죄학 연구에서 종속변수는 ‘범죄’인데 경찰이 수집하는 공식 범죄통계는 피해자 설문조사로 수집되는 범죄피해통계와 더불어 대표적인 종속변수 측정수단이 되어왔다. 형사 정책적 측면에서 보면 범죄피해신고는 사법기관이 범법행위를 인지하도록 하여 그 행위자가 적정한 사법절차를 통해 응분의 처벌을 받게 만드는 기능을 한다. 이런 점에서 범죄피해신고는 사법정의 구현하고 법치주의 질서를 유지하는데 기여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현실적인 한계는 범죄피해가 모두 경찰에 신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에서 기인한다. 경찰에 신고 되는 범죄는 실제로 발생하는 범죄의 일부에 불과하며 수많은 범죄가 사법시스템 밖에 존재하는 일군의 ‘암수범죄’를 형성하고 있다. 예를 들어, 17개 선진국의 범죄신고를 조사한 한 연구에 의하면 전체 발생범죄의 절반가량만이 경찰에 신고 되고 있다(Bouten, Goudriaan, & Nieuwbeerta, 2002). 선진국이 이 정도라면 법치주의나 사법시스템의 발전 정도가 뒤떨어진 개발도상국이나 후진국의 경우는 범죄피해신고 수준이 이 보다 훨씬 낮다고 예상해도 무리가 아니다. 낮은 범죄피해신고율은 공식 범죄통계 자체뿐만 아니라 이를 바탕으로 한 연구결과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훼손한다. 부정확한 범죄통계를 기본으로 수립된 형사정책 또한 실효성을 보장받기 힘들다. 무엇보다도 다수의 범죄행위가 법의 영역 밖에 존재한다는 사실은 법치주의의 근간을 약화시킬 우려마저 있다.

범죄피해신고와 관련해서 중요한 고려사항은 모든 사람들이 유사한 수준의 신고율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개인적, 상황적 요인의 영향을 받아 상이한 범죄신고 패턴을 나타낸다는 점이다. 도널드 블랙(Black, 1976)의 주장에 의하면 사회적 계층이나 문화 등의 차이에 의해서 법을 동원하는 양이 결정되고 이로 인해 사람에 따라 범죄피해신고율에 있어서 차이를 보인다. 특히 외국태생의 이민자들은 원주민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사회적 계층을 차지하고 있을 뿐 아니라 언어와 문화의 측면에서 법을 동원하기에 불리한 여건에 있다. 전 세계적으로 보면 1990년대부터

현재까지 OECD 국가로 유입되는 장기체류 목적의 외국인 이민자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외국태생 이민자의 숫자는 2010년 기준으로 약 2억 1천 4백만 명 정도로 추산되며 세계 총인구의 약 3.1%를 차지한다(UN, 2010). 대략적으로 한해에 OECD 국가로 이주하는 외국인이 총 3백만 명 정도에 달한다(OECD, 2011). 이러한 통계는 합법적 이민자만을 고려한 수치로 불법이민자까지 수치에 포함하면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산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이러한 추세에서 예외가 아니다. 법무부 출입국 자료에 의하면 2010년 말 기준 국내 체류외국인은 1,261,415명으로 전년도 대비 8% 증가하였다(법무부, 2010). 특히 재외동포 자격과 영주 자격부여 대상을 확대하여 2009년과 2010년 사이에 재외동포 수가 68%, 영주자격 수가 103%나 급증하는 등 이민자의 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이민자 증가추세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이민자들의 범죄 피해신고와 관련한 연구가 전혀 없다. 외국의 경우에도 인종이나 민족에 따른 범죄 피해신고율 차이와 관련한 연구들은 실시되었지만 이민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 대부분의 연구가 소수인종과 소수민족의 피해신고율을 조사하였는데 미국의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처럼 소수인종에는 속하지만 이민자가 아닌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연구들의 결과를 그대로 이민자에게 대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또한 대부분의 연구들이 단일 국가의 범죄피해통계를 분석한 반면 다수의 국가에서 수집한 범죄피해통계를 사용하여 이민자의 피해신고를 분석한 연구는 아직 없다. 본 연구는 블랙(Black, 1976)의 이론에 근거하여 이민자가 원주민에 비해 범죄피해 신고율이 낮다는 가설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와 아울러 범죄피해의 심각성 정도에 따라 이민자와 범죄피해신고율 간의 관계가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도 조사하였다. 끝으로, 유럽연합국가와 미국에서 수집한 범죄피해조사자료를 사용하여 분석결과와 외적타당도를 높이고자 하였다.

II. 관련 이론 및 선행연구 검토

1. 이민자의 범죄피해신고

도널드 블랙 (Black, 1976)의 이론은 이민자, 특히 인종적·민족적 소수자들의 범죄피해신고를 설명하는 이론적 근거로서 여러 연구에서 인용되어 왔다(탁종연, 노성훈, 2009; Avakame et al., 1999; Zaykowski, 2010). 블랙은 그의 저서 ‘법의 행동’(The Behavior of Law)에서 법은 ‘양적인 변수’라고 규정하면서, 법을 동원하는 양은 계층(stratification), 관계적 거리(morphology), 문화(culture), 조직화(organization), 그리고 사회통제(social control) 등 다섯 가지의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고 주장한다(Black 1976: 1-3). 법 위반행위가 발생하면 자동으로 법이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 법이 동원되었을 때(mobilization of law) 비로소 사용되는데 법을 동원하는 행위의 대표적인 예가 바로 경찰에 범죄피해를 신고하는 것이다(Black 1976: 126).

블랙의 이론을 적용할 때 이민자라는 지위는 계층, 문화, 조직화, 그리고 사회통제의 측면에서 법을 동원하는 행위의 제약요소가 될 수 있다. 첫째, 계층은 인종, 성별, 연령, 사회적·경제적 신분으로 측정되는데 상위계층에 있는 사람일수록 법으로부터의 거리가 짧으며 법을 동원할 가능성이 높다. 반면 낮은 계층에 있는 사람으로부터의 거리가 멀고 법을 동원하기도 어려우며 설령 동원한다고 하더라도 적절한 법적 지원을 받을 가능성도 낮다. 이민자는 한 사회의 인종적·민족적 소수자 계층을 형성하고 경제적으로도 대부분 하위계층을 차지한다. 따라서 이민자는 원주민들에 비해 법으로부터 원거리에 존재할 가능성이 높으며 범죄피해를 당해도 공권력의 도움을 요청할 가능성이 낮아진다. 더욱이 이민자들 사이에는 종종 경찰이 자신들과 같은 외국출신들에 대해 부정적 편견을 가지고 있다는 인식이 팽배하기도 하다(Weizer & Tuch, 2005). 그러다 경찰에 의한 인종적 차별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되면 실제로 범죄피해가 발생했을 때 경찰에 의해 문제를 해결하기 보다는 스스로 해결하려는 경향을 보이게 된다(Anderson, 1999; Barlow & Barlow, 2002; Roh & Robinson, 2009). 둘째, 블랙의 이론에 의하면 문화의 정도에 따라 법의 동

원량이 결정되는데 더 많은 문화를 가진 사람일수록 자신의 권리에 대해 더욱 민감해하며 법을 동원하는데 보다 적극적이다(Black 1976:61). 문화의 측면에서 본다면 이민자들은 외국 사회에서 충분한 수준의 문화를 누리기에 불리한 여건에 처해 있다. 언어적 장벽, 주류문화에 대한 이질감, 상대적으로 낮은 학력수준 등으로 인해 이민자들이 향유할 수 있는 문화의 수준이 제한되며 이로 인해 하위문화를 형성하는 수준에 머무르게 된다. 따라서 이민자들은 외국 사회에서 그들이 누릴 수 있는 문화 수준의 한계로 인해 범죄피해신고와 같이 법을 동원하는 행위가 제한될 가능성이 높다. 범죄피해를 당한 이민자들이 경찰에 신고를 하는 과정에서부터 경험하게 될 언어적 한계에 대한 부담감, 형사절차에 관한 정보와 이해의 부족 등이 미신고를 부추기는 원인이 될 수 있다(탁종연·노성훈, 2009). 셋째, 조직화란 집단적 행동을 할 수 있는 역량을 의미하는데 조직화의 수준이 높을수록 법을 동원할 가능성이 높아진다(Black 1976: 850). 따라서 개인보다는 조직이, 같은 조직 중에서는 조직화 수준이 높은 조직일수록 법의 동원에 보다 적극적이다. 이민자들은 외국사회라는 환경,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의 결여, 종종 체류신분상의 한계 등으로 인해 조직화할 수 있는 역량이 제약된다. 마지막으로, 사회통제의 측면에서 가족, 학교, 교회 등과 같은 비공식적 사회통제기제가 약하면 법의 사용을 기반으로 하는 공식적 사회통제기제에 의존할 가능성이 높아진다(Black, 1976:105). 반면 비공식적 사회통제가 강하면 법을 동원할 가능성은 낮아진다. 이민자의 경우 주류사회에 동화되지 않은 채 자신들만의 비공식적 사회통제수단에 의지해 문제를 해결하는 경우가 많다. 카터(Carter, 1983)의 연구에서도 히스패닉계 이민자들은 미국경찰관의 개입을 가장(家長)의 권위에 위협이 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미국에 거주하는 중국계 이민자들도 지역사회에서 발생하는 범죄를 경찰에 신고하기보다는 자신들만의 규칙대로 처리하는 것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Wong, 1995).

범죄피해신고 연구들 중 이민자 지위를 독립변수로 선택한 경우는 거의 없다. 다만 히스패닉계 미국인들과 같이 소수민족에 속하면서 대부분 이민자인 집단이 있기 때문에 소수인종·민족을 독립변수로 포함한 연구들의 결과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전반적으로 소수인종·민족의 범죄피해신고 경향에 관한 연구들은 엇갈린 결과들을 나타내고 있다. 킹스노쓰와 맥킨토시(Kingsnorth & Macintosh, 2004)의 연구에서

는 범죄피해의 경찰신고에 있어서 흑인과 백인 사이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비슷하게 여대생 성폭력 피해 신고를 분석한 연구에서도 히스패닉 피해자와 비교집단 간의 범죄신고 가능성의 차이가 유의미하지 않았다(Fisher et al., 2003). 심지어 바흐만과 코커(Bachman & Coker, 1995)의 연구에서는 소수인종이 백인들에 비해 오히려 더 자주 범죄피해신고를 하는 것으로 분석되어 블랙의 이론과 상반되는 결과가 나타났다. 일부 연구는 피해자의 인종이나 민족에 관계없이 가해자가 흑인인 경우 백인 가해자에 비해 경찰에 신고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결과를 보여주었다(Carbone-López, 2005). 하지만 대다수의 연구들에서는 소수인종·민족의 범죄피해신고율이 비교집단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나 블랙의 이론을 뒷받침하였다.

예를 들어, 카우키넨(Kaukinen, 2004)의 연구는 피해자가 백인인 경우 신고율이 높아지며 특히 백인 피해여성은 흑인 피해여성에 비해 경찰에 피해신고를 할 가능성이 훨씬 높은 것으로 보고하였다. 싱글러와 존슨(Singler & Johnson, 2002)의 연구에서도 청소년범죄의 경우 소수인종이 백인들에 비해 범죄피해신고를 할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재이코우스키(Zaykowski, 2010)의 중오범죄 연구에서도 소수인종 피해자가 백인 피해자에 비해서 중오범죄피해를 신고할 가능성이 35% 가량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인종과 민족 간의 범죄피해신고차이는 범죄피해의 유형에 따라 보다 다양한 패턴을 보이고 있다. 레니션(Rennison, 2007)의 연구는 강도와 강간 사건의 경우 히스패닉들이 백인들에 비해 피해신고를 덜 하지만 단순상해는 오히려 더 자주 신고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이와 비슷하게 바우머(Baumer, 2002)의 연구와 하트와 레니션(Hart & Rennison, 2003)의 연구에서도 히스패닉들은 비교집단에 비해 강도피해를 덜 신고하지만 다른 유형의 범죄(단순폭력, 중상해 등)에 있어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시아계 미국인들의 범죄피해신고를 연구한 탁종연과 노성훈(2009)의 연구에서도 아시아계 미국인들은 다른 인종이나 민족에 비해 강도피해신고율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폭행에 있어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바우머와 로릿슨(Baumer & Lauritsen, 2010)은 1973부터 2005년까지의 미국 ‘범죄피해자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흑인의 경우 단순폭행, 주거침입절도, 자동차절도의 피해를 입었을 때 경찰에 신고할 가

능성이 높아지는 반면 강간, 강도, 단순절도의 피해신고율은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피해자가 히스패닉일 때 범죄피해가 강간, 강도, 주거침입절도, 단순절도이면 신고가능성이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 범죄피해신고 결정요인 연구

범죄피해의 심각성은 범죄피해신고의 가장 중요한 결정요인 중의 하나이다. 즉, 범죄피해가 클수록 신고가능성이 높아진다. 피해심각성과 피해신고율 간의 관계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이론적 설명이 가능하다. 첫째, 비용과 이득 분석원리에 의거하여 피해수준이 높을수록 범죄신고를 통해 기대할 수 있는 이득의 양이 신고에 소요되는 비용을 초과할 가능성이 높아져서 신고 가능성이 커진다는 논리이다 (Singer, 1988). 범죄피해신고는 신고자에게 일정한 비용을 발생시키는데 예를 들어 피해자나 목격자(증인)로 경찰서와 법원에 출석하는데 소요되는 시간과 노력, 경찰 신고 과정이나 추후 합의과정에 겪어야 할 심적 부담감, 피해자 본인의 프라이버시 침해, 사건을 처리하는데 소요되는 경찰자원 등을 포함한다. 범죄신고를 통해 기대할 수 있는 피해회복의 수준이 이러한 신고비용의 총량을 초과하지 못하는 경우 신고할 가능성이 낮아지며 반면에 피해가 심각하여 예상되는 피해회복이 신고비용을 초과하면 신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둘째, 범죄피해신고자의 규범적 반응에 초점을 맞추는 접근법으로서 심각한 범죄일수록 시민적 의무감을 자극해서 신고율을 높인다는 논리이다 (Tarling & Morris, 2010). 시민적 의무감은 범위반자에 대한 정당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인식에 바탕을 둔 일종의 사회적 양심이라고 할 수 있다. 범죄를 신고하는 사람은 범죄로 인해 이득을 취하는 사람이 발생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한다는 의무감의 영향을 받으며 신고의 이득도 시민적 의무를 성취했다는 사실에서 오는 심적 만족이다. 범죄피해가 심각한 범죄일수록 시민적 의무감을 자극하는 정도가 강하고 이는 높은 신고율로 이어지게 된다. 다수의 범죄피해신고 연구에서 피해심각성이 범죄신고율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는 사실이 입증되었다 (Bennett & Wiegand, 1994; Felson, Messner, Hoking & Deane, 2002; Goudriaan, Lynch, Nieuwbeerta, 2004; Pino & Meier, 1999; Skogan, 1976; 탁종연·노성훈,

2009).

피해자가 인식하는 주관적 피해의 심각성과 범죄발생을 둘러싼 상황적 요인들과 관련된 객관적 심각성(예를 들어 폭력범죄에서는 무기소지유무, 재산범죄에서는 피해액) 모두 범죄피해신고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타알링과 모리스(Tarling & Morris, 2010)의 연구에서 영국범죄조사(British Crime Survey)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범죄피해가 심각하다고 인식한 응답자일수록 재산범죄와 폭력범죄를 불문하고 모두 높은 신고율을 보였다. 한국의 범죄피해조사에 포함된 객관적 피해심각성 지표를 사용한 탁종연(2010)의 연구에서는 피해액이 100만원 증가할 때마다 절도 신고가능성이 3.24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의 범죄피해조사를 분석한 연구에서도 범죄자가 무기를 소지할수록 강도와 폭행의 신고률이 증가하고 피해액이 높을수록 절도의 신고율 또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Zhang, Messner, & Liu, 2007).

피해심각성 이외에 범죄신고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적 요인으로는 가해자의 수와 가해자가 아는 사람인지 여부 등이 있다. 가해자 수는 범죄의 심각성과 관련이 있는 요인으로서 단독범행보다는 다수에 의한 범행일수록 보다 심각한 범죄로 다루어진다. 따라서 같은 범죄라도 다수의 가해자에 의해 저질러졌을 경우 피해신고가능성을 높일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바우머와 로릿슨(Baumer & Lauritzen, 2010)의 연구에서도 강간을 제외한 폭력범죄가 다수의 가해자가 가담한 사건이 단독범행인 사건에 비해 신고확률이 높았다.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는 폭력범죄의 피해신고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연구되어 왔다. 스코건(Skogan, 1994)의 연구에서 폭력범죄의 가해자가 피해자의 가족 구성원이거나 현재 또는 이전 동거인처럼 친밀한 관계에 있는 경우 피해신고 가능성이 줄어드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피해자가 폭력사건을 가족문제 또는 개인적인 문제로 인식하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기를 꺼려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피해자가 가해자를 단순히 일이나 여가활동 등을 통해 알고 있거나 같은 동네에 거주하면서 알게 된 경우에는 신고가능성이 오히려 증가한다. 이는 낯선 사람이 아닌 ‘아는 사람’으로부터 범죄피해를 당하면 피해자는 신고를 통해 범죄자를 검거할 가능성이 높다고 인식하기 때문이다(Tarling & Morris, 2010: 477). 반면 일부 연구에서는 낯선 사람에 의한 범죄와 아는 사람에 의한 범죄 간에

피해신고 가능성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하였다(Hart & Rennison, 2003; Baumer, 2002; Felson et al., 1999).

여성은 남성에 비해 대체적으로 높은 신고율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바우머와 로릿슨(Baumer & Lauritsen, 2010)의 연구에서도 강간(성폭력 포함)을 제외한 모든 폭력범죄에서 여성의 신고율이 남성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타알링과 모리스(Tarling & Morris, 2010)의 연구에서도 단순절도나 주거침입절도와 같은 재산범죄의 경우 여성피해자는 남성피해자에 비해 신고할 가능성이 약 50% 정도 높았다. 피해자의 경제적 수준이 범죄피해신고율에 미치는 영향은 범죄피해의 유형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구드리안과 동료들(Goudriaan et al., 2004)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재산범죄의 경우 고소득자의 피해신고율이 높은 반면 폭력범죄에 있어서는 소득수준에 의한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바우머와 로릿슨(Baumer & Lauritsen, 2010)의 연구에 의하면 단순폭력과 단순절도의 경우 저소득자의 피해신고율이 높은 반면 주거침입절도와 자동차절도는 고소득자의 신고율이 높았다. 동거가족의 유무도 범죄피해신고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배우자와 같이 친밀한 관계의 가족이 함께 거주하는 피해자일수록 범죄피해 신고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보고되었다(Felson et al., 1999). 이러한 경향은 재산범죄와 폭력범죄 모두에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났다(Goudriaan, et al., 2004; Baumer & Lauritsen, 2010). 이러한 연구결과는 피해자의 가족구성원이 피해자로 하여금 경찰에 신고하도록 독려하거나 피해자를 대신하여 신고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범죄피해자의 피해신고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요인으로는 경찰역량에 대한 신뢰수준이 있다. 비용과 이득의 분석원리를 적용한다면 피해자가 경찰의 범죄해결능력을 신뢰하지 못하는 경우 범죄피해신고로 인한 이득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신고가능성이 낮아질 것이다(Baumer, 2002). 아울러 경찰역량에 대한 신뢰는 단순히 범죄해결능력 뿐만이 아니라 선입견과 편견을 배제한 업무처리에 대한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소수인종의 낮은 신고율은 경찰의 능력 자체에 대한 불신보다는 경찰의 공정한 업무처리에 대해 신뢰도가 낮은 결과로 해석된다(Anderson, 2000). 경찰역량에 대한 신뢰가 피해신고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적 연구결과들은 일치하지 않는다. 구드리안과 동료들(Goudriaan et al., 2004)의 연구에서는 경

찰역량에 대한 신뢰가 높을수록 재산범죄와 폭력범죄의 피해신고율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타알링과 모리스(Tarling & Morris, 2010)의 연구에서는 경찰역량에 대한 신뢰와 범죄신고율은 무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마지막으로, 주거지역의 범죄발생위험에 대한 피해자의 인식이 범죄피해신고에 영향을 미친다. 탁종연(2010)의 연구에서 자신의 동네에 범죄발생 위험이 높다고 응답한 사람일수록 절도 사건피해의 신고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하여 탁종연은 자신의 동네에 범죄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인식으로 인해 앞으로 일어날 범죄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보다 적극적인 태도를 보인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탁종연 2010: 59). 하지만 ‘하위문화접근법’은 우범지역의 하위문화는 법치주의 부정, 비공식적 해결방법 선호, 경찰에 대한 반감 등의 특징을 보이며 이러한 특징들로 인해 오히려 범죄신고율이 낮아진다고 설명한다(Anderson, 1999).

III. 연구 방법

1. 분석 자료

이 연구는 ‘국제범죄피해자조사’(International Crime Victims Survey: ICVS)의 제5차년도(2004-2005) 결과를 주요자료로 활용하였다. ICVS는 범죄학 분야의 국가 간 비교연구를 도모하고자 1989년부터 유럽의 범죄학자들이 중심이 되어 실시해 오고 있는 범죄피해조사이다. 제5차년도 조사까지 약 15년에 걸쳐 78개국 30여만 명의 응답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내용은 절도, 강도, 폭력 등 10 가지 범죄의 발생량, 경찰신고유무, 사법시스템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을 포함한다(Van Dijk et al., 2007). 기존의 국가별 공식범죄통계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예를 들어 암수범죄)을 보완할 수 있는 범죄통계로서 다수의 범죄관련연구에서 활용되어 왔다.

제5차년도 조사에는 총 30개국이 참여하였으며 국가별로 약 2,000여명을 조사하였다. 조사자료의 상당 부분은 ‘유럽 위원회’(Europe Commission)가 지원하고 ‘겔

럽 유럽'(Gallup Europe)이 주도하여 실시한 '범죄와 안전에 관한 유럽조사'(European Survey on Crime and Safety)의 결과로 이루어져 있다. 유럽연합회원국 이외의 국가들은 각 국가별로 독립적인 조사기관에 의해 동일한 설문지를 사용하여 자료가 수집되었다. 조사대상자를 선정하는 방법은 국가별로 위계적 행정단위에 따라 다단계지역표본추출법으로 조사대상 가구를 선정한 뒤 가구구성원 중 16세 이상의 사람이 최종 조사대상자가 되었다. 설문방법은 주로 '컴퓨터 이용 전화 인터뷰'(CATI: computer assisted telephone interview) 방식에 의존하였지만 농촌과 같은 비도시화된 지역에서 전화인터뷰가 불가능한 경우 대면면접법을 부분적으로 사용하기도 하였다(Van Dijk et al., 2007). 이 연구에서는 제5차년도 조사자료 중 조사항목에 응답자가 이민자인지 여부를 묻는 질문이 포함된 19개국(유럽연합 18개국과 미국)의 결과만을 활용하였다. 이 중에서 단순절도, 주거침입절도, 폭행, 강도 등 4가지 종류 범죄에 대하여 한번 이상 범죄피해를 당한 경험이 있다고 대답한 응답자들만 추출하였다. 범죄피해신고 여부에 관한 질문에 결측값이 있는 응답들을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단순절도 5,847, 주거침입절도 3,056, 폭행 4,052, 그리고 강도 1,559개 응답이 각각 분석대상에 포함되었다.

〈표 1〉 기술적 통계분석

	범주	평균 (표준편차)			
		단순절도 (n=5,847)	주거침입절도 (n=3,056)	폭행 (n=4,052)	강도 (n=1,559)
종속변수					
피해신고	0-1	.54(.50)	.82(.38)	.36(.48)	.59(.49)
피해자 특성					
이민자	0-1	.12(.33)	.11(.32)	.12(.33)	.14(.35)
나이	1-4	2.52(1.09)	2.66(1.04)	2.27(1.00)	2.29(1.12)
여성	0-1	.67(.47)	.60(.49)	.56(.50)	.51(.50)
고소득	0-1	.53(.50)	.53(.50)	.53(.50)	.46(.50)
소득미상	0-1	.11(.31)	.11(.31)	.09(.29)	.15(.36)
결혼/동거	0-1	.48(.50)	.54(.50)	.46(.50)	.37(.48)

경찰역량 긍정적인식	0-1	.64(.48)	.63(.48)	.61(.49)	.59(.49)
경찰역량 인식미상	0-1	.06(.24)	.06(.23)	.04(.19)	.05(.22)
동네안전인식	0-1	.60(.49)	.60(.49)	.57(.49)	.49(.50)
상황적 특성					
피해 심각한 편	0-1	.40(.49)	.35(.48)	.37(.48)	.35(.48)
피해 매우 심각	0-1	.27(.44)	.44(.50)	.38(.48)	.45(.50)
가해자수 1명	0-1	-	-	.54(.50)	-
가해자수 2명이상	0-1	-	-	.43(.49)	-
아는사람	0-1	-	-	.38(.48)	-

2. 변수와 측정

가. 종속변수

이 연구의 종속변수는 ‘피해신고’이다. 범죄피해를 당한 후 본인이나 다른 사람이 경찰에 신고를 한 경우(변수값=1)와 신고하지 않은 경우(변수값=0)로 코딩하였다. 범죄피해신고율은 범죄유형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4가지 범죄 중 신고율이 가장 높은 범죄는 주거침입절도로서 피해자의 82%가 경찰에 신고하였다. 다음으로 강도가 59%, 단순절도가 54%, 마지막으로 폭행이 36% 순이었다 (표1).

나. 독립변수

가장 주된 독립변수는 응답자의 ‘이민자’ 여부이다. 이민자 변수는 응답자에게 자신 또는 가족 중 누가 이민자인지를 질문하여 측정하였다. 응답 중 자신, 부모, 또는 친밀한 관계의 가족 구성원 (예를 들어, 배우자나 입양자녀 등)이 이민자인 경우(변수값=1)와 가족 중 이민자가 없는 경우(변수값=0)으로 나누어 이분형 변수로 코딩하였다. 표본 중 이민자의 비율은 단순절도와 폭행 12%, 주거침입절도 11%, 그리고 강도 14%였다.

이번 연구가 관심을 둔 두 번째 설명변수는 ‘피해 심각성’이다. 앞에서도 설명했

듯이 범죄피해의 심각성은 피해자의 주관적 인식에 바탕을 두고 측정하는 방법과 범죄의 객관적 특징을 중심으로 측정하는 방법으로 나뉜다. 본 연구에서는 전자의 방법을 택하여 범죄피해 경험에 있다고 응답한 사람에게 전반적으로 고려해서 피해가 얼마나 심각했었는지를 질문하여 측정하였다. 단순절도 피해자의 27%는 매우 심각, 40%는 심각한 편이라고 응답하였다. 주거침입절도의 경우 응답자의 44%가 매우 심각, 35%는 심각한 편이라고 응답하였다. 폭행 피해자의 38%, 37%가 각각 매우 심각, 심각한 편이라고 답하였다. 마지막으로 강도의 경우 45%는 매우 심각, 35%는 심각한 편이라고 응답하였다. 전반적으로 볼 때 범죄피해를 심각하게 인식한 응답자의 비율이 강도가 80%로 가장 높았고 주거침입절도가 79%로 비슷한 수준이었으며, 다음으로 폭행이 75%, 단순절도가 67%의 순이었다.

다. 통제변수

피해자의 인구통계학적 변수로서 나이, 성별, 소득수준, 그리고 결혼/동거 상태를 포함하였다. 나이는 원래 ICVS에서 12개의 연령대집단으로 구분한 것을 4개의 집단으로 묶어서 사용하였다. 16세부터 29세(변수값=1), 30세에서 44세(변수값=2), 45세에서 59세(변수값=3), 그리고 60세 이상(변수값=4)의 순서이다. 성별은 여성(변수값=1)과 남성(변수값=0)의 이분형 변수로 코딩하였다. 소득수준은 하위 50%는 '저소득'(변수값=1), 상위 50%는 '고소득'(변수값=2)으로 구분하였다. 소득수준의 결측값이 있는 응답들은 '소득미상'으로 분류하여 보존하였다. 결혼/동거상태는 배우자나 동거인이 현재 동거하고 있는지를 기준으로 하여 '결혼/동거'(변수값=1)과 '미혼/이혼/사별'(변수값=0)로 이분하였다. 개인적 수준의 인식을 나타내는 변수로 경찰역량에 대한 인식과 동네 안전에 대한 인식을 분석에 포함하였다. 경찰역량 인식은 응답자가 속한 지역의 경찰이 전반적으로 범죄통제를 잘하고 있는지를 질문하고 '매우 잘함,' '잘하는 편임,' '못하는 편임,' '매우 못함' 중에 선택하도록 하여 측정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매우 잘함'과 '잘하는 편임'을 '긍정적 인식'(변수값=2)으로 '매우 못함'과 '못하는 편임'을 '부정적 인식'(변수값=1)으로 코딩하였다. 결측값이 있는 응답은 '인식미상'으로 분류하였다. 동네 안전에 대한 인식은 야간에 동네를 혼자 걸어 다니는 것이 얼마나 안전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답변으로 측정

하였다. ‘매우 안전함’과 ‘안전한 편임’을 ‘동네안전인식’(변수값=1)으로 ‘매우 위험함’과 ‘다소 위험함’을 ‘동네위험인식’(변수값=0)으로 코딩하였다. 마지막으로, 상황적 변수로서 폭행피해의 경우 가해자의 수와 피해자와 가해자 관계를 포함하였다. 폭행 이외의 다른 범죄에는 이러한 상황적 변수의 질문항목이 설문에 포함되어 있지 않거나(단순절도, 주거침입절도) 또는 결측값이 너무 많아서(강도) 배제하였다. 가해자 수는 가해자가 1명인 경우(변수값=1), 2명 이상인 경우(변수값=2), 그리고 미상인 경우(변수값=3)로 분류하였다. 피해자와 가해자 관계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얼굴이나 이름을 아는 경우 ‘아는 사람’(변수값=1), 모르는 경우에는 ‘모르는 사람’(변수값=0)의 이분형 변수로 코딩하여 사용하였다.

IV. 분석결과

범죄피해신고와 각 결정요인들 간의 이변량관계를 카이제곱검정을 사용하여 조사하였다. 먼저 이민자 지위는 네 가지 유형의 범죄피해 중 강도에서만 범죄피해신고와 유의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 특성 중 나이는 주거침입절도를 제외한 나머지 범죄피해유형에서 유의한 관계를 보였다. 성별에 따른 피해신고의 차이는 단순절도와 강도에서만 유의하였다. 소득수준은 단순절도와 폭행에 있어서, 혼인상태는 단순절도, 주거침입절도, 그리고 강도에 있어서 피해신고 상의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경찰역량인식에 따른 피해신고의 차이는 주거침입절도와 폭행에서만 유의하였고 동네안전인식의 경우에는 폭행을 제외한 나머지 세 가지 피해유형에서 유의하였다. 상황적 특성 중 피해심각성은 네 가지 피해유형 모두에 있어서 피해신고와 유의한 관계를 보였다. 폭행피해에만 해당되는 가해자 수와 가해자 면식은 모두 피해신고와 유의한 관계를 나타냈다.

〈표2〉 피해신고 결정요인의 카이제곱검정분석

		단순절도 (n=5,847)		주거침입절도 (n=3,056)		폭행 (n=4,052)		강도 (n=1,559)	
변수	구분	n	%	n	%	n	%	n	%
피해자 특성									
이민자	예	710	12.1	348	11.4	499	12.3	217	13.9
	아니오	5,137	87.9	2,708	88.6	3,553	87.7	1,342	86.1
χ^2		.11		.70		1.40		6.44*	
나이	16-29세	1,312	22.4	495	16.2	1,073	26.5	513	32.9
	30-44세	1,616	27.6	867	28.4	1,361	33.6	382	24.5
	45-59세	1,477	25.3	867	28.4	1,058	26.1	357	22.9
	60세 이상	1,442	24.7	827	27.1	560	13.8	307	19.7
χ^2		72.10**		3.12		19.42**		45.72**	
성별	남성	1,928	33.0	1,219	39.9	1,796	44.3	758	48.6
	여성	3,919	67.0	1,837	60.1	2,256	55.7	801	51.4
χ^2		26.94**		.76		0.34		19.01**	
소득수준	고소득(상위 50%)	3,114	53.3	1,624	53.1	2,152	53.1	726	46.6
	저소득(하위 50%)	2,090	35.7	1,094	35.8	1,514	37.4	597	38.3
	미상	643	11.0	338	11.1	386	9.5	236	15.1
χ^2		11.75**		5.21		20.56**		3.95	
혼인상태	결혼/동거	2,819	48.2	1,656	54.2	1,877	46.3	582	37.3
	미혼/이혼/사별	3,028	51.8	1,400	45.8	2,175	53.7	977	62.7
χ^2		18.11**		9.93**		2.80		5.26*	
경찰역량인식	긍정적 인식	3,769	64.5	1,929	63.1	2,494	61.5	914	58.6
	부정적 인식	1,707	29.2	953	31.2	1,397	34.5	561	36.0
	인식 미상	371	6.3	174	5.7	161	4.0	84	5.4
		5.76		10.33**		8.01*		2.68	
동네안전인식	동네안전인식	3,499	59.8	1,838	60.1	2,322	57.3	764	49.0
	동네위험인식	2,348	40.2	1,218	39.9	1,730	42.7	795	51.0
χ^2		3.96*		5.49*		.96		9.46**	
상황적 특성									
피해심각성	심각하지 않음	1,930	33.0	627	20.5	1,033	25.5	313	20.1
	심각한 편	2,321	39.7	1,085	35.5	1,494	36.9	541	34.7
	매우 심각	1,596	27.3	1,344	44.0	1,525	37.6	705	45.2
χ^2		336.41**		232.30**		482.60**		111.15**	
가해자 수	1명	-	-	-	-	2,204	54.4	-	-
	2명 이상	-	-	-	-	1,742	43.0	-	-
	미상	-	-	-	-	106	2.6	-	-
χ^2						31.83**			
가해자 면식	아는 사람	-	-	-	-	1,531	37.8	-	-
	모르는 사람	-	-	-	-	2,521	62.2	-	-
χ^2						8.00**			

* < .05, ** < .01

다음으로 이민자 지위가 범죄피해신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다변량분석으로 모든 변수를 포함한 로지스틱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표3>은 단순절도와 주거침입 절도의 피해신고에 대한 로지스틱회귀분석 결과를 나타낸다. 분석결과 피해자의 이민자 지위는 피해신고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순절도의 경우 피해자의 경찰신고 결정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피해자의 나이, 성별, 결혼상태, 경찰역량인식, 동네안전인식, 그리고 피해 심각성으로 분석되었다. 피해자의 연령이 한 단계 높은 집단에 속하면 단순절도 피해신고의 확률이 약 1.14배 증가하였다. 남성보다 여성이, 결혼이나 동거상태에 있는 피해자가 혼자 사는 피해자보다 피해신고 확률이 각각 1.26배, 1.17배 정도 높았다. 경찰의 역량에 대해 긍정적 인식을 가진 피해자의 신고확률이 다른 집단에 비해 1.14배 높았다. 거주지역에 대해 안전하다는 인식은 피해신고확률을 40.8%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 심각성은 단순절도 피해신고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나타났다. 피해를 심각한 편인 경우는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2배 정도, 피해가 매우 심각하면 3.7배 정도 피해신고확률을 높이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주거침입절도의 경우 피해신고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변수는 경찰역량인식, 동네안전인식, 그리고 피해심각성에 머물렀고 단순절도와 달리 나이나 성별과 같은 피해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징들은 $p < .05$ 수준에서 유의한 영향을 나타내지 않았다. 경찰역량에 대한 긍정적 인식은 피해신고확률을 약 48% 정도 증가시켰고 동네가 안전하다는 인식도 약 64% 정도 신고확률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주거침입절도의 피해정도가 심각한 편인 경우는 신고확률이 약 3.6배, 매우 심각한 경우에는 약 6.6배 커졌다.

〈표3〉 재산범죄 피해신고에 대한 로지스틱회귀분석

	단순절도				주거침입절도			
	b	SE	p값	Exp(b)	b	SE	p값	Exp(b)
피해자 특성								
이민자	-.009	.084	.915	.991	-.085	.154	.058	.918
나이	.129	.026	.000	1.138	.075	.049	.125	1.078
여성	.234	.060	.000	1.264	.119	.104	.253	1.126
소득수준 (vs.저소득)								
고소득	.027	.063	.666	1.028	.204	.114	.073	1.226
소득미상	-.232	.095	.015	.792	.266	.176	.130	1.305
결혼/동거	.154	.058	.008	1.167	.192	.106	.070	1.212
경찰역량인식 (vs. 부정적인식)								
긍정적인식	.135	.062	.030	1.145	.390	.112	.001	1.478
인식미상	-.211	.120	.079	.810	-.062	.213	.771	.940
동네안전인식	.342	.059	.000	1.408	.494	.110	.000	1.639
상황적 특성								
피해 심각성 (vs.심각하지 않음)								
심각한 편	.720	.064	.000	2.054	1.276	.121	.000	3.582
매우 심각	1.320	.075	.000	3.744	1.894	.130	.000	6.649
카이자승	449.1		.000		263.8		.000	
-2로그우도	-3808.64				-1291.74			

〈표4〉는 폭행과 강도 피해신고에 대한 로지스틱회귀분석 결과를 보여준다. 폭행 피해의 경우 이민자 지위는 $p < .05$ 수준에서 피해신고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강도피해의 경우에는 이민자 지위와 피해신고가 유의한 부적 관계를 나타냈다. 피해자가 이민자 집단에 속했을 때 그렇지 않을 때와 비교하여 피해신고확률이 27.8%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피해자 특성 변수들 중 폭행피해신고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를 나타낸 것은 성별, 소득수준, 결혼상태, 그리고 경찰역량인식이었다. 성별에 있어서는 절도와는 반대로 피해자가 여성이

면 폭행피해신고 확률이 15.2% 작아졌다. 또한, 피해자가 평균이상소득자 집단에 속하면 다른 집단에 비해서 폭행피해신고 확률이 21.8% 감소하였다. 결혼 또는 동거관계에 있는 피해자가 그렇지 않은 피해자에 비해 피해신고 확률이 1.2배 정도 높았다. 경찰에 대한 긍정적 인식도 폭행피해신고와 유의한 정적관계를 나타냈다. 상황적 특성 중 피해심각성과 가해자가 1명인 경우가 피해신고와 유의한 관계를 보였다. 폭행피해가 심각한 편이라고 답변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피해신고 확률이 약 2.7배 높았으며 피해가 매우 심각한 경우에는 신고확률이 무려 7.7배 높았다. 가해자 수가 1명인 경우는 그렇지 않은 경우와 비교해서 신고확률이 절반 정도에 불과했다. 마지막으로 강도피해신고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나이, 경찰역량인식, 그리고 피해심각성으로 나타났다. 피해자의 연령이 높을수록 강도피해신고 확률이 증가하였다. 또한, 경찰역량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가진 피해자 집단의 신고확률이 타 집단에 비해 1.3배 정도 높았다. 다른 유형의 범죄피해들처럼 피해심각성은 가장 높은 예측력을 나타낸 변수로서 피해가 심각한 편인 경우 2.2배, 매우 심각한 경우 4.2배 정도 신고확률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4〉 폭력범죄 피해신고에 대한 로지스틱회귀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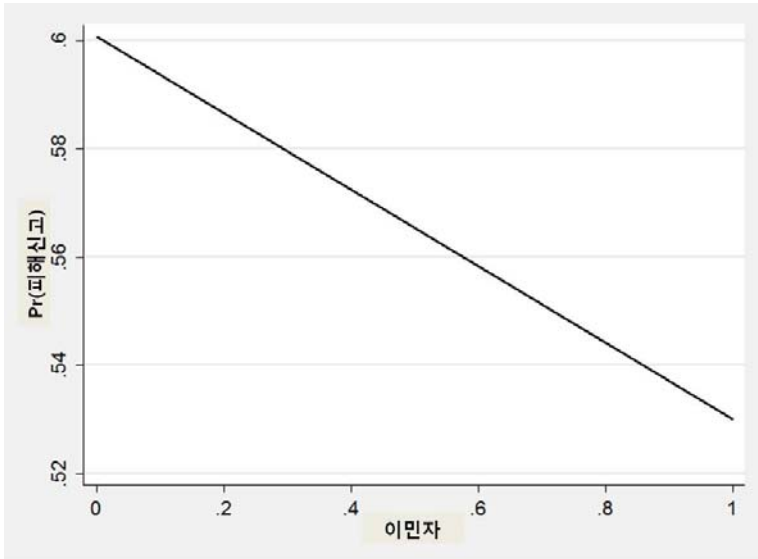
	폭행				강도			
	b	SE	p값	Exp(b)	b	SE	p값	Exp(b)
피해자 특성								
이민자	-.194	.108	.073	.824	-.326	.156	.036	.722
나이	.063	.037	.085	1.065	.247	.054	.000	1.281
여성	-.165	.075	.029	.848	.213	.113	.059	1.238
소득수준 (vs. 저소득)								
고소득	-.246	.079	.002	.782	.082	.125	.514	1.085
소득미상	-.199	.130	.125	.820	-.114	.168	.495	.892
결혼/동거	.181	.076	.016	1.199	.102	.122	.402	1.108
경찰역량인식 (vs. 부정적인식)								
긍정적인식	.192	.077	.012	1.213	.281	.118	.017	1.324
인식미상	-.397	.202	.050	.673	-.222	.252	.380	.801

동네안전인식	.136	.075	.071	1.146	-.079	.116	.494	.961
상황적 특성								
피해 심각성 (vs. 심각하지 않음)								
심각한 편	1.009	.106	.000	2.744	.804	.149	.000	2.236
매우 심각	2.045	.105	.000	7.732	1.431	.149	.000	4.181
가해자수 (vs. 미상)								
1명	-.663	.215	.002	.515				
2명 이상	-.381	.216	.077	.683				
아는 사람	.098	.074	.183	1.103				
카이자승	572.56		.000		164.0		.000	
-2로그우도	-2367.23				-973.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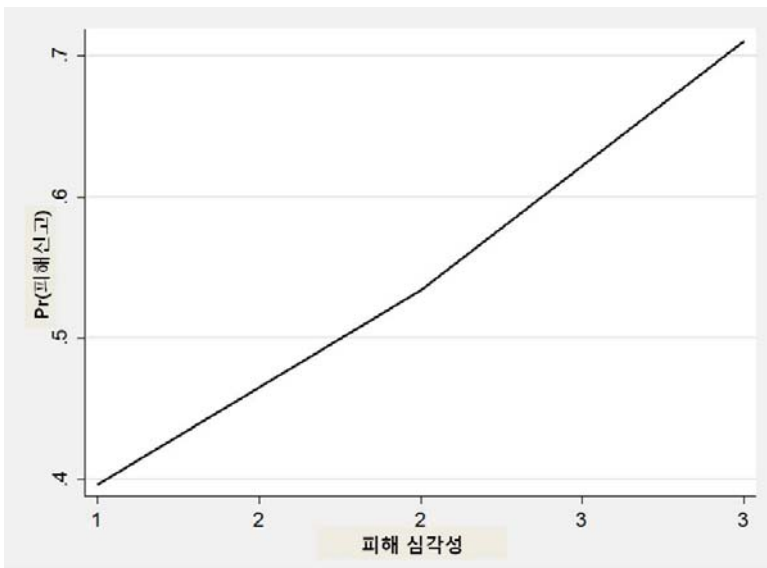
마지막으로 피해심각성의 수준에 따라 이민자 지위가 피해신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목적상 이민자 지위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독립변수로 나타난 강도 피해신고에 대해서만 분석하였다. 먼저 이민자 지위와 피해심각성이 강도피해신고에 미치는 상호작용효과가 있는지를 분석하기 위해 상호작용효과 변수를 포함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표5>에서 보듯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호작용 효과는 발견되지 않았다. 다음으로 이민자 지위와 피해심각성에 따른 강도피해신고 예측확률을 각각 그래프로 나타내었다(그림 1, 2).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와 마찬가지로 강도 피해자가 이민자일 때와 피해가 심각할수록 신고예측확률은 증가하였다. <그림 3>은 이민자 지위에 따른 강도피해신고 예측확률을 피해심각성의 정도에 따라 분리하여 나타내고 있다. 이민자와 원주민 간의 피해신고 예측확률이 가장 큰 경우는 피해가 심각한 편에 해당할 때로 나타났다. 반면 피해가 심각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민자와 원주민 간의 피해신고 차이가 거의 없었다. 피해가 매우 심각한 경우에는 이민자의 피해신고 확률이 비교집단에 비해 낮았으나 그 차이는 피해가 심각한 편인 경우에 비해 적었다.

〈표5〉 강도피해신고에 대한 로지스틱회귀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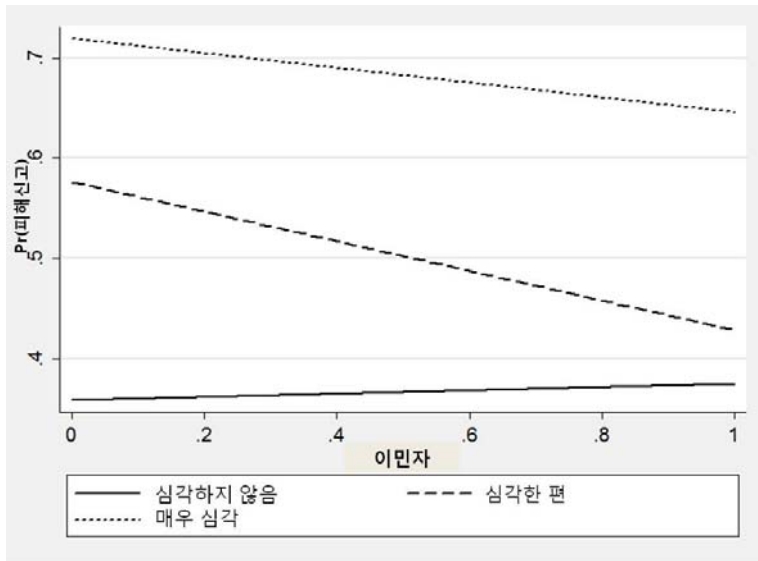
	b	SE	p값	Exp(b)
피해자 특성				
이민자	-.269	.161	.096	.764
나이	.247	.054	.000	1.280
여성	.214	.113	.059	1.239
소득수준 (vs. 저소득)				
고소득	.082	.125	.514	1.085
소득미상	-.126	.168	.451	.881
결혼/동거	.103	.122	.401	1.108
경찰역량인식 (vs. 부정적인식)				
긍정적인식	.275	.118	.020	1.317
인식미상	-.238	.253	.346	.788
동네안전인식	-.079	.116	.496	.924
상황적 특성				
피해 심각성 (vs. 심각하지 않음)				
심각한 편	.554	.211	.009	1.740
매우 심각	1.290	.205	.000	3.632
상호작용효과				
이민자 X 심각한편	-.700	.421	.096	.496
이민자 X 매우심각	-.397	.407	.329	.672
카이제곱	166.77		.000	
-2로그우도	-971.77			



〈그림1〉 이민자 지위에 의한 강도피해신고 예측확률



〈그림2〉 피해심각성에 의한 강도피해신고 예측확률



〈그림 3〉 피해심각성 수준별 이민자 지위에 의한 강도피해신고 예측확률

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이민자와 원주민 간에 범죄피해신고에 있어서의 차이를 조사하였다. 선행연구들의 결과를 바탕으로 이민자의 범죄피해신고율이 원주민에 비해 낮을 것으로 예상하였다. ICVS 자료를 분석한 결과 네 가지 범죄피해 유형 중 강도피해의 경우에 있어서만 이민자 지위가 범죄피해신고율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상처럼 이민자는 원주민에 비해 강도피해 신고가능성이 낮았다. 선행연구들과 마찬가지로 피해심각성의 정도는 범죄의 종류와 상관없이 피해신고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즉, 피해의 정도가 심각할수록 경찰에 신고할 가능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강도피해의 심각성 수준에 따른 이민자 지위와 피해신고 간의 관련성을 조사하였다. 강도피해가 중간수준에 해당하는 ‘심각한 편’인 경우 이민자와 원주민 간의 피해신고율이 가장 큰 차이를 보였다. 피해가 매우 심각한 수준일 때에도 이민자의 신고율이 높았지만 원주민과의 신고율 차이는 피해가 심각

한 편인 경우보다는 적었다. 반면, 피해가 심각하지 않을 때에는 두 집단 간의 피해 신고율 차이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범죄피해 심각성에 따른 피해신고결정원리에 관한 두 가지 입장에 의해 설명될 수 있겠다.

첫째, 비용과 이득분석원리에 의하면 범죄신고로 인해 기대되는 이득이 비용을 초과할 때 피해자의 신고가능성이 높아진다. 원주민과 비교할 때 이민자는 피해신고로 기대할 수 있는 이득을 낮게, 예상되는 비용은 높게 계산할 가능성이 높다. 체류국의 형사사법시스템에 대한 이해와 정보의 부족, 언어장벽, 사회적 자본의 결여, 체류 신분상의 제약 등의 요소들은 피해회복의 기대가능성을 낮추고 신고에 소요되는 비용을 높인다. 그런데 범죄피해가 매우 심각하지도 그렇다고 경미하지도 않은 경우 이민자와 원주민 간의 피해신고율 차이가 가장 큰 것은 두 집단이 손익분기점을 다르게 인식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피해가 경미한 경우에는 이민자나 원주민 공통적으로 피해신고의 실익이 없다고 인식하기 때문에 신고율에 차이가 없는 것이다. 하지만 범죄피해 심각성 수준이 증가할수록 신고의 기대이익 또한 증가하게 되며 신고에 소요되는 예상비용을 초과하는 지점부터 신고의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이민자는 앞에서 설명한 이유들로 인해 원주민들보다 신고비용을 높게 책정하며 이로 인해 피해신고의 순이익이 발생하는 지점이 피해심각성 척도에 있어서 원주민보다 상향 조정되는 것이다. 따라서 피해가 중간수준일 때에 원주민은 피해신고를 순손실로 여기는 반면 원주민은 순이익으로 계산할 가능성이 가장 높기 때문에 두 집단 간의 차이가 가장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두 번째, 범죄에 대한 이민자와 원주민간의 규범적 반응 차이로 설명할 수 있다. 범죄가 심각할수록 피해자와 그 주변 사람들의 시민적 의무감을 자극하여 신고 가능성을 높인다. 그런데 이민자들은 원주민들에 비해 이러한 규범적 반응기제가 약하게 작동할 가능성이 크다. 이민자들은 많은 경우 외국인 신분을 유지하거나 불법 체류자이다. 체류국의 국적을 획득했다고 해도 체류국의 사회와 문화에 동화되지 않은 채 살아가는 이민자들도 많다. 이들은 동일한 사회 속에 존재하지만 원주민들과 비교할 때 사회에 대한 소속감이나 의무감은 현저히 떨어진다고 할 수 있다. 더욱이 다른 외모와 언어로 인해 원주민들의 편견과 차별을 경험하게 되면 주류사회에 대한 이질감과 소외감을 느끼게 된다. 따라서 불법행위에 대한 규범적 반응으로

서의 신고행위는 이민자와 원주민에게서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심각하지 않은 범죄에 대해서는 이민자와 원주민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규범적 반응을 불러일으키지 않을 것이다. 반면 범죄의 심각성이 높아질수록 범죄를 신고해야 한다는 시민적 의무감이 커지게 된다. 이때 피해심각성 척도에 있어서 규범적 반응을 자극하여 신고행위로 이끄는 지점이 원주민의 경우가 이민자에 비해 낮게 형성되게 된다. 다시 말해서 원주민은 피해가 일정한 정도 심각하다고 판단되면 신고의무감이 발생하지만 이민자는 피해의 정도가 그 보다 더 높아야 신고의무감을 인식하게 된다. 이러한 규범적 반응 차이로 인해 범죄피해심각성이 중간수준일 때 두 집단 사이의 피해신고 가능성이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번 연구 결과는 이민자들의 범죄피해신고와 관련하여 형사정책적 차원에서 몇 가지 시사하는 점이 있다. 첫째, 형사사법시스템에 대한 이민자들의 접근성을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민자나 외국인들은 법을 동원할 수 있는 역량 차원에서 불리한 위치에 있다(Black, 1976). 이민자라는 지위 때문에 자신이 누려야 할 법적인 권리를 충분히 누리지 못 하는 경우가 많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우선 이민자들에 대한 법률지원서비스를 확충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외국인 노동자나 다문화 가정을 상대로 무료 법률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비영리단체들이 있고¹⁾ 최근에는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외국인들을 위한 법률서비스 및 통역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으니²⁾ 그 규모와 숫자가 매우 제한적이다. 이민자들과 외국인들에게 보다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기 위해서는 이러한 무료 법률서비스를 정부와 민간이 협력하여 확대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법률상담과 서비스의 확충만으로 범죄피해를 당한 이민자들이 자신의 피해 구제를 위해 적극적으로 신고하도록 유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강도와 같은 강력범죄의 피해를 당한 상황에서 당장 필요한 것은 법률적 지원보다는 경찰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기 때문이다. 이민자와 외국인들이 경찰에 피해신고를 꺼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신고시점부터 사건처리가 종료될 때까지 언어적 장벽이 최소화되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범죄피해를 당한 외국인들의 신고접수를 담당하기 위한 외국인 전용 범죄신

1) 예를 들어,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재단(<http://www.rainbowlaw.or.kr>)에서는 ‘이주 외국인 법률지원 센터’를 운영하면서 이주 외국인들에게 무료로 법률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2) 2012년부터 경기도는 외국인주민 대상 무료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다.

고시스템을 고려해 볼 만하다.³⁾ 사건조사 과정에서는 원주민들과 동등한 수준의 피해자 권리를 누리는데 의사소통의 문제가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외국인이어서 차별받는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도록 사건 처리에 있어서 공정성과 형평성의 원칙이 철저히 지켜져야 할 것이다. 이 외에도 사건조사에 소요되는 시간, 참고인 요구 등 범죄피해신고에 부수적으로 따르는 다양한 비용들을 최소화하여 이러한 비용 때문에 신고를 기피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둘째, 외국 이민자들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정착하고 원주민과 융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앞에서 논의했듯이 이민자들의 낮은 범죄신고율은 범죄라는 탈규범적 행위를 용인하지 않는 내적 규범장치가 작동하지 않은 때문이기도 하다. 사회 구성원들의 행위를 통제하는 비공식적 통제메커니즘의 근간에는 사회 구성원 간의 합의와 결속력이 있다. 뒤르켐(Durkheim, 1982)의 ‘집합적 인식’(collective consciousness)나 콜맨(Coleman, 1990)의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 등은 이러한 비공식적 통제메커니즘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환경과 관련된 용어들이다. 뒤르켐에 의하면 개인은 사회 속의 일원으로 자신을 인식할 때 자신의 행동을 대다수의 사회 구성원들과 일치시키려 한다. 사회적 자본은 구성원들 간의 네트워크와 신뢰를 나타내며 상호간의 협동과 공동의 노력을 이끌어내는 동력이 된다. 범죄피해를 신고하지 않는 현상은 단순히 피해자가 피해를 수용하느냐 없느냐의 개인적 차원의 문제를 넘어선다. 한 사회가 법률로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가 발생했을 때 이를 묵과하지 않아야 한다는 의무감이 확장된 자아인 시민으로서 인식할 수 있느냐의 문제이다. 더 나아가 사회 구성원으로 범죄신고를 통해 범죄자가 반드시 사법시스템에 의해 정당한 처벌을 받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의무감이 형성되는가의 문제이다. 이와 관련하여 일찍이 시카고학파는 범죄를 지역사회의 구조적인

3) 외국인 거주자가 밀집한 지역을 관할하는 경찰서들은 몇 년 전부터 ‘외국인 범죄피해신고센터’를 설치하여 외국인 관련 범죄 및 피해 신고체계를 구축하여 놓고 있다. 하지만, 외국인 범죄 통제와 범죄피해외국인 보호라는 상이한 기능을 ‘외국인’이라는 하나의 주체어로 결합한 다소 모호한 성격의 부서라고 보인다. 더욱이 범죄피해를 당한 외국인들의 보호보다는 외국인에 의해 저질러진 범죄의 신속한 신고와 처리에 중점을 두고 있는 점도 한계다. 이로 인해 일부 지역에서는 범죄피해외국인의 신고접수와 지원만을 담당하는 별도의 부서를 운영하고 있다. 제주경찰청이 운영하는 외국인 과 다문화 가정을 위한 ‘도움센터’와 경남지방경찰청의 ‘365 외국인 SOS 도움센터’가 그러한 예에 해당된다.

문제로 인해 발생하는 현상으로 파악하고 외국계 이민자의 유입을 지역사회의 비공식적 사회통제 메커니즘을 약화시키는 주된 요인으로 지적하였다(Shaw & McKay, 1942). 근래에는 샘슨과 그의 동료들(Sampson et al., 1999)이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자신들의 지역사회 문제에 대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해결 의지와 능력을 의미하는 ‘집합적 효능성’(collective efficacy)이 다민족으로 구성된 지역사회일수록 약하며 이는 높은 범죄율과 관계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종합해 볼 때, 외국계 이민자의 약한 사회적 소속감과 시민적 의무감은 낮은 범죄피해신고율로 나타날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전반적인 범죄통제능력을 약화시키고 범죄율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대한 해결책은 이민자들이 자신을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인식하고 일정한 시민적 의무감이 형성되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나라에서는 몇 년 전부터 다양한 다문화프로그램들을 운영하면서 거주외국인들이 한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한국생활에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가르치는 교육 프로그램, 상담과 의료지원과 같은 서비스 프로그램, 그리고 한국문화에 대한 이해를 돕는 문화행사 프로그램을 포함한다(김은미 외, 2009). 하지만 이민자들이 진정으로 한국사회에 소속감을 갖고 원주민들과 유대감을 형성하기 위해 보다 중요한 점은 이민자들에 대한 원주민들의 태도와 인식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순혈주의 전통으로 인해 외국인에 대한 편견과 선입견이 강한 편이다. 원주민들과 이민자 간의 접촉과 소통의 기회를 높여 상호간에 긍정적 이미지를 형성하고 사회적 거리감을 줄이는 방향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번 연구는 이민자와 원주민들의 범죄피해신고율의 차이가 범죄피해의 유형과 심각성의 정도에 따라 다른 양상을 나타낸다는 사실을 보여줬다는 점에 의미를 찾을 수 있다. 하지만 연구가 내포한 몇몇 한계로 인해 연구결과의 해석에 있어서 주의가 필요하다. 첫째, 조사대상이 유럽연합에 속한 국가와 미국의 거주민에 한정되기 때문에 연구결과를 다른 지역의 국가에 적용하는데 한계가 있다. 향후 실시될 ICVS에서 이민자 관련 변수가 유럽·미국 이외의 국가 설문조사에 포함이 된다면 새로이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여 분석결과의 외적 타당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범죄피해신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로 개인적 수준의 변수들만 포함하였다. 하지만 국가적 수준에서도 개인의 범죄피해신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존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사법시스템에 대한 신뢰도, 사회적 자본, 범죄발생을 등에 있어서의 국가 간 차이가 피해신고에 일정한 설명력을 가질 가능성이 높다. 본 연구에서는 개인적 수준과 국가적 수준의 변수들을 포함하는 다수준분석을 실시하기에는 분석에 포함된 국가의 숫자가 총 19개로 부족하다. 앞으로 ICVS 자료에 이민자 관련 변수가 유럽·미국 이외의 국가에까지 확대되어 측정되면 다수준 분석이 가능하리라 본다.

참고문헌

〈국내문헌〉

- 김은경, 최수형, 박정선, 2009. “2008년 한국의 범죄피해에 관한 조사연구(VI) 서울: 한국 형사정책연구원
- 김지선, 김지영, 홍영오, 박미숙, 2006. “한국의 범죄피해에 관한 조사연구(V)” 서울: 형사 정책연구원
- 법무부, 2010.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연보 서울: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
- 탁종연, 2010. “범죄피해자의 신고 결정요인 분석: 절도와 사기를 중심으로.” 형사정책연구 21:53-75.
- 탁종연, 노성훈, 2009. “인종이 범죄피해신고에 미치는 영향: 동양계 미국인의 강도와 폭행피해 신고경향을 중심으로.” 한국경찰연구 8:41-70.

〈국외문헌〉

- Anderson, E. (1999). *Code of the street: Decency, violence, and the moral life of the inner city*. New York: Norton.
- Bachman, R. & Coker, A. (1995). Police involvement in domestic violence: The interactive effects of victim injury, offender's history of violence and race. *Violence and Victims*, 10, 91-106.
- Barlow, D.E., & Barlow, M.H. (2002). Racial profiling: A survey of African American police officers. *Police Quarterly*, 5, 334-358.
- Baumer, E.P. (2002). Neighborhood disadvantage and police notification by victims of violence, *Criminology*, 40, 579-616.
- Baumer, E. & Lauristen, J. (2010). Reporting crime to the police, 1973-2005: A multivariate analysis of long-term trends in the national crime survey (NCS) and national crime victimization survey (NCVS),” *Criminology*, 48,

131-185.

- Bennett, R.R. & Wiegand, R.B. (1994). Observations on crime reporting in a developing nation, *Criminology*, 32, 135-148.
- Black, D. (1973). The mobilization of law. *Journal of Legal Studies*, 2, 125-49.
- Black, D. (1976). *The behavior of law*. New York: Academic Press.
- Bostaph, L. (2007). Race and repeats: The impact of officer performance on racially biased policing. *Journal of Criminal Justice*, 35, 405-417.
- Carbone-López, K. (2005). The “usual suspects”: How race affects decisions to report rape victimization. *Journal of Ethnicity in Criminal Justice*, 3, 29-47.
- Carter, D.L. (1983). Hispanic interaction with the criminal justice system in Texas: Experiences, attitudes and perceptions. *Journal of Criminal Justice*, 11, 213-227.
- Coleman, J. (1990). *Foundations of social theory*.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Copes, H.K., Kerley, K.R., Mason, K.A., & Wyk, J.V. (2001). Reporting behavior of fraud victims and Black’s theory of law: Empirical Assessment. *Justice Quarterly*, 19, 343-363.
- Durkheim, E. (1982). *The rules of the sociological method*. New York: The Free Press.
- Engel, R.S. & Calnon, J.M. (2004). Examining the influence of drivers’ characteristics during traffic stops with police: Results from a national survey. *Justice Quarterly*, 21, 49-90.
- Felson, R.B., Messner, S.F., & Hoskin, A.W. (1999). The victim-offender relationship and calling the police in assaults. *Criminology*, 37, 931-947.
- Felson, R.B., Messner, S.F., Hoskin, A.W., & Deane, G. (2002). Reasons for reporting and not reporting domestic violence to the police. *Criminology*, 40, 617-647.
- Fisher, B.S., Daigle, L.E., Cullen, F.T., & Turner, M.G. (2003). Reporting sexual

- victimization to the police and others: Results from a national-level study of college women. *Criminal Justice and Behavior*, 30, 6-38.
- Goudriaan, H., Lynch, J.P., Nieuwbeerta, P. (2004). Reporting to the police in Western nations: A theoretical analysis of the effects of social context. *Justice Quarterly*, 21, 933-969.
- Harris, D. A. (1999). The stories, the statistics, and the law: Why “driving while black” matters. *Minnesota Law Review*, 84, 265-326.
- Hart, T.C., & Rennison, C.M. (2003). *Reporting crime to the police, 1992-2000*. Washington, DC: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 Kaukinen, C. (2004). The help-seeking strategies of female violent crime victims.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19, 1-24.
- Lundman, R.J. (2004). Driver race, ethnicity, and gender and citizen reports of vehicle searches by police and vehicle search hits: Towards a triangulated scholarly understanding. *The Journal of Criminal Law & Criminology*, 94, 309-349.
- OECD (2011). *International migration outlook: SOPEMI 2011*, OECD Publishing. (available at http://dx.doi.org/10.1787/migr_outlook-2011-en).
- Ong, M., & Jenks, D.A. (2004). Hispanic perception of community policing: Is community policing working in the city? *Journal of Ethnicity in Criminal Justice*, 2, 53-66.
- Pino, N.W. & Meier, R.F. (1999). Gender differences in rape reporting. *Sex Roles*, 40, 979-990.
- Sampson, R.J., & Bartusch, D.J. (1998). Legal cynicism and (subcultural?) tolerance of deviance: The neighborhood context of racial differences. *Law and Society Review*, 32, 777-804.
- Sampson, R., Morenoff, J., & Earls, F. (1999). Beyond social capital: Spatial dynamics of collective efficacy. *Science*, 277, 918-924.
- Shaw, C. & McKay, H. (1942). *Juvenile delinquency and urban areas*. Chicago:

-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Skogan, W.G. (1976). Citizen reporting of crime: Some national panel data. *Criminology*, 13, 535-549.
- Skogan, W.G. & Hartnett, S.M. (1997). *Community policing, Chicago style*.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Rennison, C. (2007). Reporting to the police by Hispanic victims of violence. *Violence and Victims*, 22, 754-772.
- Roh, S. & Robinson, M. (2009). A geographic approach to racial profiling: The microanalysis and macroanalysis of racial disparity in traffic stops. *Police Quarterly*, 12, 137-169.
- Singler, R. & Johnson, I. (2002). Reporting violence acts to the police: A difference by race. *Policing: An International Journal of Police Strategies and Management*, 25, 274-293.
- Skongan, W.G. (1994). *Contacts between police and public: Findings from the 1992 British Crime Survey, Home Office Research Study No. 134*. London: Home Office.
- Sparks, R.F., Genn, H.G., & Dodd, D.J. (1977). *Surveying victims: A study of the measurement of criminal victimization, perceptions of crime, and attitude to criminal justice*. New York: John Wiley.
- U.N. (2010). *World population policies 2009*, United Nations Publication (available at http://www.un.org/esa/population/publications/wpp2009/Publication_complete.pdf).
- Van Dijk, J., Van Kesteren, J., & Smit, P. (2007). *Criminal victimization in international perspective: Key findings from the 2004-2005 ICVS and EU ICS*. The Hague: WODC.
- Walker, S., Spohn, C., & Delone, M. (2004). *The color of justice: Race, ethnicity, and crime in America* (3rd ed.). Belmont, CA: Thompson Wadsworth.
- Weitzer, R. & Tuch, S. (2005). Racially biased policing: Determinants of citizen

perceptions. *Social Forces*, 83, 1009-1030.

Wong, M.G. (1995). Chinese Americans, In P.G. Min (Ed.) *Asian Americans: Contemporary trends and issues*, (pp.58-94). Thousand Oaks, CA: Sage Publications.

Zaykowski, H. (2010), Racial disparities in hate crime reporting, *Violence and Victims*, 25, 378-394.

Zhang, L., Messner, S.F., & Liu, J. (2007). An exploration of the determinants of reporting crime to the police in the city of Tianjin, China, *Criminology*, 45, 959-984.

Impact of Immigrant Status and Seriousness of Crime on Reporting to the Police

Sunghoon Roh, Ph.D.*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the differences between immigrants and natives in their decisions to call the police to report crime. Drawing upon Donald Black's (1974) theory and the empirical findings of previous studies, it is hypothesized that immigrants are less likely to report crime to the police than natives when they are victimized. The results show that immigrant status is inversely related to crime reporting only for robbery victimization. Seriousness of crime is the strongest predictor and is positively associated with crime reporting. The difference in crime reporting between immigrants and natives is greatest when crime is fairly serious. The degree of difference decreases when victims perceive crime as very serious. On the other hand, the likelihood to call the police is not different for non-serious crime. Finally, policy implications are discussed including the strategies to provide immigrants with a better access to the criminal justice system and the prerequisites to embrace immigrants as members of our society.

❖ Key words : Immigrants, Reporting to the police, Criminal victimization, Seriousness of crime

투고일 : 3월 1일 / 심사(수정)일 : 3월 26일 / 게재확정일 : 3월 26일

* Korean National Police University, Department of Public Administration Assistant Professor

